

의안번호	제2048호
의 결	2019. 10. .
연 월 일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향숙 의원 외 4인
발의연월일	2019. 10. 1.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향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8
----------	------

발의연월일: 2019. 10. 1.

발 의 자: 김향숙·이용재·최상림·김원순
정영환 의원(5인)

1. 개정이유

-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설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센터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자원봉사자 활용방안(안 제10조)
- 주민참여 방안 마련 의무 규정(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나.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9-28호

- 예고기간: 2019. 10. 4. ~ 10. 10.(6일)

- 의견반영 등 조치내용: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제8조로 하며,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한다.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제4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시설)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기능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센터 이용자 대표
2. 센터 직원 대표
3. 지역주민 대표
4. 가정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가정문제, 건강가정 또는 가족문화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 군수는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참여)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센터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4조 · 제5조 (생 략)</p> <p>제6조 (생 략)</p> <p><u><신 설></u></p>	<p><u>제4조(시설)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기능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u></p> <p><u>제5조 · 제6조 (현행 제4조 및 제5조와 같음)</u></p> <p><u>제8조 (현행 제6조와 같음)</u></p> <p><u>제7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u></p> <p><u>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u></p> <p><u>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센터 이용자 대표</u> <u>2. 센터 직원 대표</u> <u>3. 지역주민 대표</u>

제7조 (생 략)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4. 가정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가정문제, 건강가정 또는 가족문화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삭 제>

제10조(자원봉사자) 군수는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참여)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

영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센터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